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- 24호

「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23일

## 강릉시 의회 의장

###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: 안 제1조 ~ 제2조

나.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, 금액, 절차 등을 규정함 : 안 제3조 ~ 제5조

다. 교복구입비의 환수 및 기타사항을 명시함 : 안 제15조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국, 전문위원, 전화: 640-4033, 팩스: 640-407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 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교복구입비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교복구입비의 지원)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 대상)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2.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
제5조(지원 금액)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. 다만, 강원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절차) ① 시장은 중·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.

② 그 밖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「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환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
제8조(기타사항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.